No. _____	영 수 증	(공급받는자 보관용)
_____ 귀하		20 년 월 일
금 액	일금 원정 **(₩)**	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. (부가가치세 해당 시 포함)

공급자	사업자등록번호		상 호	
	대 표 자	(인)	주 소	
	업 태		종 목	

품 목	수 량	단 가	금 액
합 계			

비고:

- 절 취 선 -

| No. _____ | 영 수 증 | (공급자 보관용) |
|---|---|---|
| _____ 귀하 | | 20 년 월 일 |
| 금 액 | 일금 원정 **(₩)** | |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. (부가가치세 해당 시 포함)

| 공급자 | 사업자등록번호 | | 상 호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대 표 자 | (인) | 주 소 | |
| | 업 태 | | 종 목 | |

| 품 목 | 수 량 | 단 가 | 금 액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합 계 | | | |

비고:

※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3 만원 이하 거래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이나(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2 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 조의 2),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3 만원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 일반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EDITED. · www.edited.kr